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서 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병 진료권 보장을 위하여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에는 본인진료목적의 청원휴가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에는 20일로 규정되어 법령 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개정이 요구됨.

3. 주요내용

가. 본인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일수를 '20일'에서 '30일'로 변경(안 제48조의2제3항)

- 1)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(청원휴가)제1항제1호에는 본인진료목적의 청원휴가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제48조의2제3항에는 20일로 규정되어 법령 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30일로 변경을 통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고 장병의 진료권을 보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향후 추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향후 추진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,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 전속(전속)을 명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제48조의2(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<u>20일 미만인</u>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, 진료기간이 <u>20일 이상인</u>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(전속)을 명한다. ④~⑥ (생략)	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제48조의2(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<u>30일 이하인</u>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, 진료기간이 <u>30일을 초과할</u>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(전속)을 명한다. ④~⑥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	
연 락 처	(02) 748 - 5167